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교홍의원 · 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김교홍 · 정점식 · 김준형

최혁진 · 문진석 · 김 현

주철현 · 박지원 · 전진숙

양문석 · 김승수 · 백혜련

정진욱 · 박 정 · 양부남

소병훈 · 김종민 · 허성무

임이자 · 이해식 · 이재정

서천호 · 곽규택 · 조계원

김준혁 · 송옥주 · 김대식

윤재옥 · 백종현 · 최민희

이정현 · 어기구 · 신동욱

박해철 · 박정하 · 김미애

김정재 · 최수진 · 윤종균

송언석 · 김도읍 · 한지아

조승래 · 최형두 · 서삼석

강선영 · 박균택 · 채현일

김영배 · 박정현 · 서영교

김석기 · 김용태 · 조배숙

조은희 · 김승원 · 정태호

윤준병 · 정희용 · 이상휘

이만희 · 김태선 · 배준영

윤종오 · 전종덕 · 김소희

한창민 · 손명수 · 서일준
박충권 · 구자근 · 김종양
권향엽 · 곽상언 · 고민정
강선우 · 김문수 · 이재관
추미애 · 이성윤 · 박선원
허종식 · 한병도 · 이성권
김동아 · 이병진 · 김상욱
정춘생 · 손 술 · 오세희
김영호 · 박희승 · 용혜인
김현정 · 이기현 · 민홍철
권칠승 · 임오경 · 이주희
조승환 · 이수진 · 조정식
이준석 · 진성준 · 정준호
임호선 · 박수현 · 노종면
송기현 · 차지호 · 김영진
천하람 의원(1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·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8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금

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금	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9조의6 각 호의 사업
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	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
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「 <u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</u> 」 제19조제5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금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